

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연계 지원제도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
1. R&D	산업기술분야 (산업기술혁신법 §11①9)	- 산업기술개발사업(R&D, 사업화) 출연 또는 보조(법 §11②)
2. 입지	지식기반산업 (산업집적법 §2-8, 영§4의4)	-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단지조성, R&D, 기반 조성, 기술이전·사업화 우선 지원(법 §22의2①) -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(법 §22의2⑥) - 지식산업센터(아파트형 공장)*에 입주가능(법 §28의5) *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·증설 허용(영 §26-2)
	첨단기술기업 (연구개발특구법 §9, 영§12의3①)	-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법 §15) ⇒ 수의계약, 분납 허용
	제주투자진흥지구 (제주특별법 영§22①2자)	-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법 §165) ⇒ 수의계약, 분납 허용 * 첨단기술 중 전자·전기·정보·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
	해안내륙 투자진흥지구 (해안내륙발전법 영§33④12)	- 입주기업 용매입비 용자, 토지 임대료 감면, 개발 사업 자금지원(법 §27①) * 첨단기술 중 전자·전기·정보·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 -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법 §27②) ⇒ 수의계약 허용
	외국인투자지역 (외투자지역운영지침 §11-2)	-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
3. 세제	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(지방세법 §13②, 영§26①5)	-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외(지방세법 §13②) * 법 §11에 따른 해당 세율 적용
	첨단기술기업 (조특법 §12의2①1, 영§11의2①4)	-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법 §12의2②) * 세액공제율 : 최초 3년 100%, 다음 2년 50% - 개인지방소득세 감면(지특법 §105②)
4. 금융	외국인투자 (외국인투자법 §14의2①2, 5)	-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(법 §14의2①) * 공장 및 연구시설의 신설·증설, 연구개발 용도
	자유무역지역 (자유무역지역법 영§31의2①2)	-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자금지원(법 §49①)
5. 기술보호	산업기술 (산업기술보호법 §2-1나)	- 산업기술 유출의 벌칙 및 제재(법 §36) ①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내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③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얻은 재산 몰수
6. 구매	드론첨단기술 (드론법 §13, 영 §14①)	- 시도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용 요청(법 §13②)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(법 §13③)